광명시 공고 제2024-392호

「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0일

광명시장

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구 분 : 일부개정

2. 개정 이유

G-스포츠클럽(경기도형운동부)을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추가하여체육 인재 육성 지원에 기여하고, 광명건강체육센터(수영장, 다목적체육관) 개관 예정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'G-스포츠클럽(경기 도형운동부)의 체육활동'추가
-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9조(사용시간) 제6항 '광명건강체육센터 사

용시간'신설

-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10조(사용료 등) 조문 및 [별표1] 개정, [별표7] 신설
-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14조(사용료 등의 감면) 단서 조항 추가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 제출

- 가.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2024. 2. 19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(참조 : 체육진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, 의견 제출사항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이유)
 -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제출기관: 광명시장(참조: 체육진흥과장)
 - 주 소 :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03(우 14259)
 - 문의처 : 체육진흥과(☎ 02-2680-6360)

의 견 제 출 서

□ 성	명(단체명)	:

□주 소:

□ 전화번호(핸드폰) :

□ 자 치 법 규 명 :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

조례안 내용	의	견	비고

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G-스포츠클럽(경기도형운동부)을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추가하여 체육 인재 육성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.
- 광명건강체육센터(수영장, 다목적체육관) 개관 예정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'G-스포츠클럽(경기 도형운동부)의 체육활동' 추가
-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9조(사용시간) 제6항 '광명건강체육센터 사용시간' 신설
-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10조(사용료 등) 조문 및 [별표1] 개정, [별표7] 신 설
-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14조(사용료 등의 감면) 단서 조항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발췌서: 붙임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 의: 예산법무과, 기업지원과, 여성가족과, 감사담당관, 복지정책과

라. 기타사항

(1)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: 2024.1월 원안 가결

(2) 입법예고 : 2024. 1. 30. ~ 2. 19.(20일간)

(3) 성별영향평가 실시 : 2024. 2월 중

(4) 부패영향평가 실시 : 2024. 2월 중

광명시 조례 제 호

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G-스포츠클럽(경기도형운동부)의 체육활동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광명건강체육센터

구 분	평일	주말(토)
사용시간	오전 6시 ~ 오후 9시	오전 9시 ~ 오후 6시

제10조제2항 중 "별표6"을 "별표7"로 하며 "별표7"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2항 중 [별표 1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"국민체육센터"를 "국민체육센터, 광명건강체육센터"로, "체육센터(다목적구장)"를 "체육센터(다목적구장), 광명건강체육센터(체육관)"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의 감면 사항은 별표7과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	체육진흥과
	- 된 ㅜ	- ^1	শাস্থতিস
	과	장	강 원 식
입 안	틲	장	체육시설팀장
_		0	이 민 호
자	담 대	당 자	이 승 찬
	성명	·전화	(02-2680-6360)

[별표7

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사항

	구 분	기 준	이용료(원)	비고	
월	성 인	1명, 1월	75,000		
	중고생	1명, 1월	65,000	특별	
회원	어린이	1명, 1월	60,000	프로그램	
일일	성 인	1명, 1일	4,000		
	중고생	1명, 1일	3,500	별도	
이용	어린이	1명, 1일	3,000		
		감면사항			
	구분	할인율	비고		
경로우대	만 65세 이상	50%			
기초생활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수급자	50%			
국가보훈 대상자 적용대상자(본인 및 배우자)		50%			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 장애인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	50%	심한장애 ⁽ 보호자 1(
다자녀 가정	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	50%			
* 일일입장권(자유수영)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*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(중복할인 불가)					

- ①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②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6조 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이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- ③ 해당 시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부속시설로 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복지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시장은 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-----체육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를 하되.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광명시 거 주자를 우선으로 한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7. G-스포츠클럽(경기도형운동부)의 체육활동 8. • 9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 7. · 8. (생 략) 제9조(사용시간) ① 체육시설의 일일 제9조(사용시간) ① -----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하고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.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. 다만,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6. 광명건강체육센터 구 분 평 일 주말(토) 사용시 오전 6시 ~ 오후 오전 9시 ~ 오후 6시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사용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사용료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장 이 부과·징수하되,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·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

현	행	개 정 안
의 사용료 등을	종합적으로 고려하	
여 별표1부터 <u>별</u>	<u>표6</u> 까지로 정한다.	<u></u> 별표7
③・④ (생 략)	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사용료 등으	감면) 시장은 다	제14조(사용료 등의 감면)
음 각 호의 어느	하나에 해당할 때	
에는 사용료 및	이용료를 감면할 수	
있다. <단서 신설	!>	다만,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의
		감면 사항은 별표7과 같다.
1. ~ 4. (생 략)		1. ~ 4. (현행과 같음)
[별표 1]		[별표 1]
시설전성	· 사용료	시설전용사용료
	(단위 : 원)	(단위 : 원)
, , & FF	사용료 비고	사용료 장소 시설별 용 단 구 위 Bell 토·공 비고
	일 후일 휴일	0 가 기르르 구 위 명일 토·광 기 교 분 휴일
주경기장 중	000 202,800 * 사용료는 2시간(단, 광명오 픈아트홀은 4시간)을 기본	생 번 F56000 2022000 * 사용료는 2시간(단, 광명오 존경기장 이 (잔디광장) 회 반 234000 3042000 *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
(잔디광장) 외 행 관 사 외	000 304,200 *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 에 준함.	(찬디광장) 월 판 사 의 234,000 304,200 *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 에 주함.
산	8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 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	주 간 52,000 67,600 *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 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정
경 간 ^	수함. 600 87,800 *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 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,	체 육 야 67,600 87,800 *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 경 간 67,600 87,800 * 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,
	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 000 101,400 는 경우에 대관한다. *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	기 판 구용(000 101,400 는 공학에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. *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
광명시민 기 세육관 주 20 세 간 20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	을 이용한 단체 행사는 주 3000 270,400 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	제육관 주 208,000 270,400 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
광명시민 육	으로 간주함. *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* 채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	광명시민 광명시민 의 으로 간주함. *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*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

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 용료 야간행사는 30% 가산

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

족구장, 국궁장, 테니스장

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% 가산

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

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

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

료의 20% 가산

행사는 30% 가산.

100,000 130,000 *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

150,000 195,000 * 광명오픈아트홀 조명·

야간행사는 30% 가산.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

간

" 육 경

안벽장

광명오픈 연 행

아트홀

312,000 405,600

52,000 67,600

130,000 169,000

야간행사는 30% 가산.

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

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

용료 야간행사는 30% 가산

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

족구장, 국궁장, 테니스장

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

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

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

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

료의 20% 가산

행사는 30% 가산.

30% 가산

100,000 130,000 *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

| 150,000 | 195,000 | * 광명오픈아트홀 조명

강

암벽장

광명오픈 연 아트홀 행

312,000 405,600

52,000 67,600

130000 169000

		ğ	1		ō	9				7	}	정	ą	<u>}</u>		
1		ı	외				ı				외					
			수 간	26,000	33,800						구 간	26,000	33,800			
		체 육	야	33,800	43,900					체 육	야	33,800	43,900			
		경 기	간 관	39,000	50,700				체육센터	경 기	간 관	39,000	50,700			
<u>국 민</u> 체육센터	<u>체육센터</u> (다목적구 <u>장)</u>		외 주				광대	<u>민</u> 육센터, 경건강	<u>(다목적</u> <u>구장),</u> 광명건강		외 주					
		체육	간	104,000	135,200		<u> </u>	<u>육센터</u>	<u>체육센터</u> (체육관)	체육	간	104,000	135,200			
		이 외 행	야 간	135,200	175,700	음향장비 별도				이 외 행	야 간	135,200	175,700	A 22-2 A 22-		
		사	관 외	156,000	202,800	- 음향 1회당 : 30,000원 - 조명 1시간당 : 10,000원 - 마이크 1개당 : 5,000원				사	관 외	156,000	202,800	음향장비 별도 - 음향 1회당 : 30,000원 - 조명 1시간당 : 10,000원		
	족구장, 다목적구	면	주 간	5,000	10,000	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			족구장, 다목적구	면	주 간	5,000	10,000	- 마이크 1개당 : 5,000원		
	장	당	야 간 	10,000	20,000				장	당	야 간 -	10,000	20,000			
배 수 지 체육시설, 구 름 산	국궁장		주 간 야	10,000	20,000			수 지 육시설,	국궁장		주 간 야	10,000				
시 립 테니스장			간	20,000	30,000		시	름 산 립 니스장			간	20,000	30,000			
족 구 장	데니스자 면				주 간	10,000	20,000			족 구 장		면	주 간	10,000	20,000	
	-11-18	당	야 간	20,000	30,000				테니스장	당	야 간	20,000	30,000			
		축 구 7	관 내	40,000	60,000	*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 로 한다.				축	관 내	40,000	60,000	*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 으		
		경 기 	관 외	60,000	90,000	*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, 100명 초과 시 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				구 경 기	년 관 외	60,000	90,000	로 한다. *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, 100명 초과 시		
시 민 운동장	인 조 잔디구장	축 구 경 기	관 내	80,000	120,000	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 되,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	시 운	민 동 장	인 조 잔디구장	축 구 경	관 내	80,000	120,000	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 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 되, 100퍼센트를 초과할		
		이 외 행 사	관 외	120,000	180,000	- 30분 미만 : 기본사용료				기 이 외 행	관 외	120,000	180,000	1 42-16		
		축 구	관 내	40,000	60,000	의 30퍼센트 - 30분~1시간 이내 :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				사 축	관	40,000	60,000	- 30분 미만 :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- 30분~1시간 이내 : 기본		
		경 기	관 외	60,000	90,000	*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				구 경 기	관	60,000	90,000	사용료의 100퍼센트 *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		
노온정수 장부 지	다목적 운동장	축 구 경 기	관 내	80,000	120,000	을 제한할 수 있다. *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. *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		온정수 부 지	다목적 운동장	축구경	외 관 내	80,000	120,000	의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 을 제한할 수 있다. *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.		
		이 외 행 사	관 외	120,000	180,000	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 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*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				³ 기 이 외 행	 관 외	120,000	180,000	 *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 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		
소하배수 펌 프 장	광명 야구장	야 구 경	관 내	40,000	60,000	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	소 [†]	하배수	광명	야	관	40,000	60,000	*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 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		

현 행	개 정 안
기 환 60,000 90,000 야 구 반 80,000 120,000 기 이 의 환 120,000 180,000 사 120,000 180,000	캠 프 장 야구상 무 관 대 80,000 120,000 감안하여 시장이 고서할 수 있다.
[신 설]	[별표 7]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사항
	구분 기준 이용료(원 비고
	성 인 1명, 1월 75,000
	월 중고생 회원 중고생 1월 65,000
	어린이 1명, 60,000 특별 1월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
	전 인 1명, 4,000 별도 19
	일일 중고생 1명, 3,500
	이용 1일 5,600 어린이 1명, 1일 3,000
	※ 감면사항
	구분 할인율 비고
	경로우 대 만 65세 이상 50%
	기초생 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활 제2조에 의한 수급자 50%
	국가보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훈 적용대상자(본인 및 50% 대상자 배우자)
	장애인 다라 등록된 장애인 50% 보호자 1인 포함
	다자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가정 50%
	* 일일입장권(자유수영)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*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(중복할인 불가)
	①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
	୍ରା

현 행	개 정 안
	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
	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	②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6조 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
	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이용료에 포함된 것으로
	본다.
	③ 해당 시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부속시설로 시설
	에
	대한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복지관
	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.

관계 법 령 발 췌 서

관계법령	내	8	
지방	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경	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ㅈ	배산의 사용에
자치법	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	다.	
	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(Î) 사용료·수수료 또는	분담금의 징
	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	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지	나치단체나 그
	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	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	으로 통일할
	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시	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]에도 불구하
	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	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	방자치단체가
	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	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	100분의 50
	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	하여 징수할 수 있다.	
	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	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	는 분담금의
	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	징수를 면한 금액의 5	배 이내의 과
	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	· 자에 대하여는 50만	원 이하의 과
	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호	길 정할 수 있다.	
	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7	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	절차에
	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	제법」에 따른다.	

- 12 -

관계법령	내 용
스포츠클럽	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	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,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 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
	제13조(선수 육성 지원 등)
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
	클럽에서
	우수한 선수를 발굴、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、재정적 지원을
	할 수 있다.

관계법령	내 용
광명시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의 체육시설(이하 "체육시설"이라 한
체육시설	다)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운영·관리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조례	1. "체육시설"이란 광명시장이 설치・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
그 네	시설을 말하며"부속시설"에는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, 설비 또
	는 비품 등이 포함 된다.
	2. "시설의 사용"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,
	광고게시, 공연,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
	4. "사용자"란 제3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"사용료"란 사용
	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	5. "이용자"란 개인연습,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
	자를, "이용료"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	제10조(사용료 등)
	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설전용사용료, 연습이용료, 방송
	사용료, 선전・광고 사용료, 부속시설사용료, 골프연습장 이용료
	등으로 구분하되, 그 요금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.

- 13 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□ 미첨부 사유
 - O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(기금)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 - ※「지방자치법」재78조 및「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, 제4조 근거

경제문화국 체육진홍과장 강원식